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조 례 9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0 ~ 4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2010 ~ 42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15
2010 ~ 43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10 ~ 44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0 ~ 45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0 ~ 4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10 ~ 47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5
2010 ~ 48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5
2010 ~ 4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1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 조례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 및 평가,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 군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거창군과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나.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다.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강화 등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11조, 제20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다. 합의 : 관계부서 합의 마침(기획감사실 외 9개부서)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6. ~ 9.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은 관할구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은 관할구역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경상남도의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이행상황의 점검·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장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군 소속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거창군의회 의원이나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한다.

**제22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23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4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할 것

**제25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2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을 위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거노인 공동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동생활을 하려는 독거노인이 5명 이상이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다. 등록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군수는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 경비 또는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되,
-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함

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사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군수가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거나 (이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공생활을 포기할 때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로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8조, 제27조의2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으로 확보 계획(6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17. ~ 10. 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
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3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4세대(世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금전보상 차원의 부양 등에 필요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부모에 대한 부양환경 조성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함

다. 효도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라. 효도수당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지급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지급함  
○ 군수가 효도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를 위하여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토록 함

마. 효도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효도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군수는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 지급중지 사유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면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으로 확보(15,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9. 20. ~ 10.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추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4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장학생의 신청·추천·선발 등 추진절차,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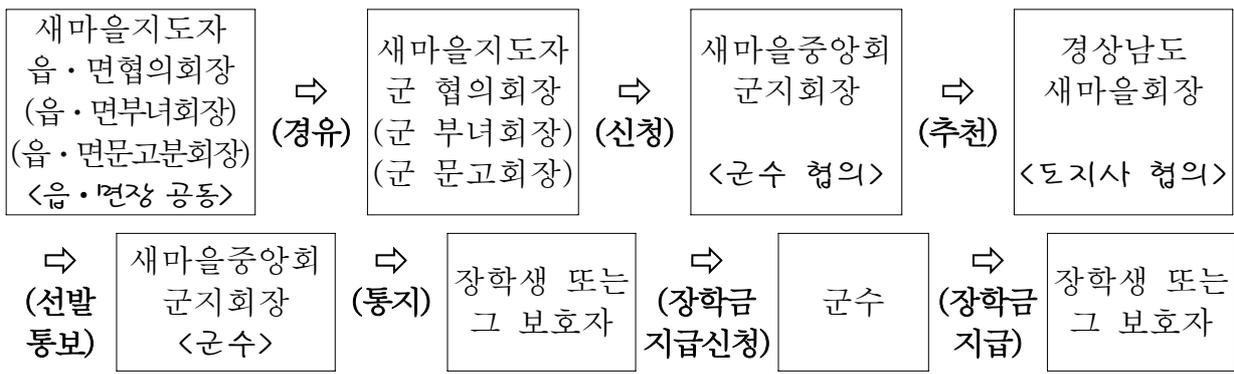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변경함(안 제1조).

-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
  - 중·고등학생 ⇒ 고등학생·대학생

나.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종전 중·고등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기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현행 :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자(중·고등학생 공통 적용)
- 개정
  - 고등학생 :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 대 학 생 :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 새마을장학생의 신청과 추천, 선발 등 추진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안 제5조 삭제).



라.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지급금액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함(안 제7조).

-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

마. 우등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로서 중·고등학생에게 공통 적용하던 학습성취도 하락비율 기준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현행 :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 개정
  -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 대 학 생 :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를 순화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4,9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8. 27. ~ 9.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새마을지도자”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대학교”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새마을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운동에”를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로,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공자 장학생”을 “유공장학생”으로, “새마을사업수행중”을 “새마을사업수행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우등생 장학생”을 “우등장학생”으로,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교장 또는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입학전”을 “입학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생 장학생”을 “특기장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의”로, “갓춘때”를 “갓춘 때”로, “1인”을 “1명”으로, “지급받은 자”를 “지급받는 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분회장이 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및 군 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 추천한다.

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6조 중 “7퍼센트”를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장학금의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군수와 군지회장이”를 “군수가”로, “매학기 개시후”를 “매 학기 시작 후”로, “장학생”을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경우
  4.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u>중·고등학교</u>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u>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u>	제1조(목적) ----- <u>새마을지도자</u> ----- ----- ----- ----- <u>고등학교 · 대학교</u> ----- ----- <u>새마을장학금</u> ----- ----- .
제2조(장학금의 종류) <u>장학금</u> 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u>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u> ----- ----- .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u>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u>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 . ---,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u>
1. <u>유공자 장학생</u> 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u>새마을사업수행중</u>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u>유공장학생</u> ----- ----- ----- <u>새마을사업 수행 중</u> ----- -----
2. <u>우등생 장학생</u> 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u>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같음한다.</u>	2. <u>우등장학생</u> ----- ----- <u>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교장 또는 총장 ·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 전</u> ----- .

현행	개정안
<p>3. <u>특기생 장학생</u>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p> <p>② 제1항 <u>각호</u> 자격요건을 <u>갖춘때</u>에도 새마을지도자 <u>1인</u>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로부터 <u>장학금을 지급받은</u> 자는 제외한다.</p>	<p>3. <u>특기장학생</u>-----</p> <p>-----</p> <p>-----</p> <p>② --- <u>각 호의</u> ----- <u>갖춘 때</u>---</p> <p>----- <u>1명</u>-----</p> <p>-----</p> <p>----- <u>지급받은 자</u>-----</p> <p>-----.</p>
<p>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회장(이하 "군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4조(장학생의 추천) 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분회장이 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및 군 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p>
	<p>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p> <p>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2.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p>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p>

현행	개정안
<p>제5조(선정) ① <u>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2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li> <li>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li> <li>3.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li> </ol> <p>② &lt;삭제&gt;</p>	<p>&lt;삭제&gt;</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u>7퍼센트</u>로 한다.</p>	<p>제6조(장학생의 정원) ----- ----- <u>7퍼센트 이내</u>-----</p>
<p>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p>	<p>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u>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u>군수가 매 학기 시작 후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p>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p> <p>2. &lt;삭제&gt;</p> <p>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p> <p>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p> <p>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 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p>	<p>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p> <p>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외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p> <p>2.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p> <p>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경우</p> <p>4.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p> <p>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p>
<p>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액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장학금-----) ----- ----- -----.</p>
<p>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p>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5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외국인”으로 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추가하며,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 신설과 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를 20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 용어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 제명 변경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불일치 사항 조정

-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

-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유지)

나.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5호 신설).

- 종전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이나 생활·취업 등 상담,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외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추가함

라.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2장의 제목,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에 심의권 부여

-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 위촉위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2,1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9. 20. ~ 10.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들”로, “지원방안”을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 가정”을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군내”를 “국내”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지원 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거주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임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외국인”을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로, “적응”을 “정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군내에”를 “군에”로, “외국인의 수”를 “외국인주민의 수”로, “외국인 지원시책”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대상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과”를 “제1항 각 호와”로 한다.

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장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군수를 자문한다”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외국인 가정”을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을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으로 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 등에 대해서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외국인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행정·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로, “외국인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위탁업무”를 “위탁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세계인의 날”을 “다문화 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에”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를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세계인의 날부터 한 주간”으로,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를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명예군민증”을 “명예군민증서”로, “외국인 포함”을 “외국인주민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시책”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서 수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u>	<u>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u>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u>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u>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u>지원방안</u>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외국인주민들</u>-----                  -----                  ----- <u>행정적</u>  <u>지원방안</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u>외국인</u>”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u>자</u>를 말한다.</p> <p>2. “<u>거주외국인</u>”이란 거창군(이하“<u>군</u>”이라 한다)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u>외국인</u>을 말한다.</p> <p>3. “<u>외국인 가정</u>”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u>외국인</u>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p> <p>4. “<u>외국인 지원 단체</u>”란 <u>거주외국인</u>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뜻</u>은 -----.</p> <p>1. -----                  ----- <u>사람</u>을 ----.</p> <p>2. “<u>외국인주민</u>”이란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u>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u> 등을 말한다.</p> <p>3. “<u>외국인주민 가정</u>”---- <u>국내</u>-----                  ----- <u>외국인주민</u>-----                  -----                  -----.</p> <p>4. “<u>외국인주민 지원단체</u>”---- <u>외국인주민</u>-----                  -----.</p>

현행	개정안
<p>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u>거주외국인</u>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u>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u>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거주외국인</u>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주민-----) ① <u>외국인주민</u>----- <u>제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u> -----</p> <p>-----.</p> <p>② ----- <u>외국인주민</u>-----</p> <p>-----.</p>
<p>제4조(군의 임무) ① 군수는 <u>거주외국인</u>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u>적용</u>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u>살아갈 수 있도록</u>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군수는 <u>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u>의 수 등 <u>외국인 지원시책</u>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u>실시</u>한다.</p>	<p>제4조(-- 책무) ① ---- <u>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u>----- <u>정착</u>----- <u>살아갈 수 있는 여건</u> 형성을 위한 <u>적절한 시책</u> -----.</p> <p>② 군수는 다음 해 <u>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u>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u>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u>확정</u>하여야 한다.</p> <p>③ ----- <u>군에</u> ----- <u>외국인주민의 수</u>--- <u>외국인주민지원시책</u> ----- <u>실시</u>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주외국인</li> <li>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li> <li>3. 국제결혼 이민자</li> <li>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li> </ol>	<p>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li> </ol> <p>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li> <li>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li> </ol> <p>② --- 제1항 각 호와 ----- ----- -----.</p>
<p>제2장 자문위원회</p>	<p>제2장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p>
<p>제7조(설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제7조(설치)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행	개정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p>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u>군수를 자문한다.</u></p> <p>&lt;신설&gt;</p> <p>1. <u>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u>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p> <p>2. <u>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u>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3. <u>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u>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제10조(기능) ----- 각호-----</p> <p>----- 심의 또는 자문한다.</p> <p>1. <u>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에 관한 사항</u></p> <p>2. <u>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가정</u>-----</p> <p>3. <u>외국인주민</u>-----</p> <p>4. <u>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생략)</p>	<p>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u>위원에</u>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 <u>위원 등에</u> 대해서는 --- <u>범위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 -----.</p>
<p>제3장 <u>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u></p>	<p>제3장 <u>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u></p>
<p>제14조(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군수는 <u>외국인 지원단체</u>의 활동에 필요한 <u>행정·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u>외국인주민 지원단체</u>----- <u>행정적·재정적</u> -----.</p>
<p>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외국인 지원단체</u>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u>외국인 지원단체</u>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u>위탁업무</u>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업무의 위탁) ① --- <u>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 ----- <u>외국인주민 지원단체</u>----- -----.</p> <p>② --- <u>제1항에 따라</u> ----- ----- <u>범위</u> ----- -----.</p> <p>③ --- <u>외국인주민 지원단체</u>----- ----- ----- <u>위탁 및 운영비 지원</u>-----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u>지역내</u> 거주하는 <u>외국인</u>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u>거창군 세계인의 날</u>로 하고 <u>세계인의 날</u>을 전후하여 1주간을 <u>다문화 주간</u>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명예군민증</u> 수여, 유공자·단체(<u>외국인 포함</u>) 격려</p> <p>4. 그 밖에 <u>외국인</u>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p> <p>③ 군수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u>외국인 지원단체</u>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다문화 주간) ① ----- <u>지역에</u> ----- <u>외국인주민</u>-----</p> <p>-----</p> <p>----- “<u>거창군 세계인의 날</u>”로 정하고 <u>세계인의 날</u>부터 한 주간---- <u>다문화</u> 주간으로 설정한다.</p> <p>② <u>군수는 제1항에 따른</u>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명예군민증서</u> -----(<u>외국인 주민 포함</u>) ---</p> <p>4. ----- <u>외국인주민</u> -----</p> <p>-----</p> <p>③ -----</p> <p>----- <u>외국인주민 지원단체</u>-----</p> <p>-----.</p>
<p>제17조(포상) ① 군수는 <u>거주외국인 지원</u>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외국인</u>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시책</u>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p> <p>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u>거창군 포상조례</u>」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조(포상) ① --- <u>외국인주민 지원</u>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p> <p>-----.</p> <p>② -----</p> <p>----- <u>외국인주민</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u>-----</p> <p>-----</p> <p>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u>거창군 포상조례</u>」를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18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p> <p>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서 수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9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p>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6
----------	-----------

제출일자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2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안 별표 3 신설).
- 다. 현행 다음 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6항 후단 신설).
-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직기간 미산입, 연가 미가산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사유에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포함하여 공제토록 함(안 제18조, 제20조제1항).
- 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과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참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원격지 간 정보발령 부임’ 사유는 삭제함(안 제22조).

바. 별표 3으로 규정한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별표 4로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함(안 제23조제1항, 안 별표 4).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따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은 정비 하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조사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 삭제).

아.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 삭제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70조, 제71조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7조의4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경남도 행정과-28185호('10.8.5)]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9. 1. ~ 9.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을 “개인의 신상”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겸임근무와”를 “겸임업무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를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로,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언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을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을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을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잔여”를 “남은”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를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월”을 “1개월”로,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출은 누계 8시간을”을 “외출의 누계 8시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개월}-\text{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일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출은 누계 8시간을”을 “외출의 누계 8시간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우려”를 “염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검열, 점호”를 “검열점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를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승진, 전직시험”을 “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 또는 국가단위”를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는”으로,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를 “출산 전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출석수업 시간”을 “출석수업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피해지역”을 “재해지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 본문·제4항·제5항 및 제10항 중 “얻을”을 각각 “받을”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 중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를 “휴가기간의 범위에서”로, “국의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표 4로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 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2조(복무선서) ① ----- ----- 「지방공무 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u></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 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1. ~ 2. (생 략)</p> <p>3. <u>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 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p> <p>4. (생 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개인의 신상</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생 략)</p> <p>④ <u>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⑤ (생 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현 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② (생 략)</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소속기관의 장 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지체 없이</u> ----- -----.</p>

현행	개정안
<p>제9조(겸임근무) ① <u>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u>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u>겸임근무와</u>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 <u>법 제30조의3에 따라</u> ----- ----- ----- ----- -----.</p> <p>② ----- <u>겸임업무와</u> ----- ----- ----- ----- -----.</p>
<p>제10조(파견근무) ① <u>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u>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파견근무) ① <u>법 제30조의4에 따라</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제2장 근무시간	<삭제>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근무는 직 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 또 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 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 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 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 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하게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근무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 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 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 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p> <p>③ 해당 연도에 <u>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u>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u>한하여</u>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 병가를 <u>언지</u> 않은 공무원</p> <p>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u>잔여 연가일수가 있는</u> 공무원</p>	<p>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p> <p>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p> <p>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p> <p>③ ----- <u>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u> ----- ----- ----- 공무원에게는 ----- <u>한정하여</u> ----- ----- ----- 1. --- <u>받지</u> ----- 2. ----- ----- <u>연가일수가 남아 있는</u> ----- -----</p>
<p>&lt;신설&gt;</p>	<p>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p>

현행	개정안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p> <p>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u>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u></p> <p>③ (생략)</p> <p>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으면 공무수행을 위해 <u>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u>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u>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u> <u>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u>잔여</u>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u>범위 안에서</u>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공무원에게는 ----- ----- 제25조의2에 따른 <u>공무 외의 국외여행</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u> -----.</p> <p>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 ----- <u>사용하지 않은</u> <u>경우</u>----- <u>범위에서</u> ----- ---- <u>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u> <u>연가를</u> ----- -----.</p> <p>⑥ ----- -- <u>남은</u> ----- ----- ----- <u>범위에서</u> ----- ----- ----- <u>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u> <u>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u> <u>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u>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u>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u>-----.</p>
<p>② <u>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u>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u>1월</u>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p>	<p>② <u>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u> ----- ----- ----- ----- <u>1개월</u>----- ----- ----- -----.</p>
<p>○ <u>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u></p>	<p>○ <u>휴직자 12개월-해당 연도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2개월 휴직기간(개월) 연도 연가일수</u></p>
<p>③ <u>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u>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③ ----- ----- <u>외출의 누계 8시간은</u> ----- -----.</p>
<p>④ <u>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u>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p>	<p>④ <u>제21조제1항에 따른</u> ----- ----- ----- -----.</p>

현행	개정안
<p>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u>범위 내에서</u>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u>외출은</u>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u>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1. (생략)</p> <p>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p> <p>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u>요양을 요하는</u> 경우에는 연 180일의 <u>범위 내에서</u>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1조(병가) ① ----- ----- ----- <u>범위에서</u> ----- ----- ----- <u>외출의</u> 누계 8시간은 ----- 제20조제4항에 따라 ----- ----- <u>병가일수는 산입하지</u> <u>않는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염려</u> -----</p> <p>② ----- ----- ----- <u>요양이 필요한</u> ----- <u>범위에서</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u>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u>검열, 점호</u>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p> <p>2. (생략)</p> <p>3. <u>법률의</u>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p> <p>4. <u>승진, 전직시험</u>에 응시할 때</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p>	<p>제22조(공가) ----- ----- ----- <u>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u> -----.</p> <p>1. ----- ----- <u>검열점호</u> -----</p> <p>2. (현행과 같음)</p> <p>3. <u>법률에</u> 따라 -----</p> <p>4. <u>승진시험·전직시험</u>-----</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7. 원격지 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p> <p>8. (생략)</p> <p>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p>&lt;신설&gt;</p>	<p>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p> <p>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p> <p>&lt;삭제&gt;</p> <p>8. (현행과 같음)</p> <p>9. -----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p> <p>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p> <p>----- 별표 4 -----</p> <p>----- 받을 -----.</p> <p>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는 ----- 출산 전후에 -----.</p> <p>③ -----</p> <p>----- 받을 -----.</p> <p>④ -----</p> <p>받을 -----.</p>

현행	개정안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u>출석수업시간</u>에 대한 수업휴가를 <u>얻을</u> 수 있다.</p> <p>⑥ ~ ⑨ (생략)</p> <p>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u>피해지역</u>에서 자원봉사활동을 <u>하고자</u>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u>얻을</u> 수 있다.</p>	<p>⑤ ----- ----- ----- ----- <u>출석수업기간</u> ----- <u>받을</u>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 <u>재해지역</u>----- ----- <u>하려는</u> ----- ----- <u>받을</u> -----.</p>
<p>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lt;삭제&gt;</p>
<p>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u>휴가기간</u> 범위 내에서 <u>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u>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u>공무 외의 목적</u>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의2(국외여행) ----- <u>휴가기간의</u> 범위에서 <u>공무 외의 목적</u>----- ----- -----.</p>

현행			개정안		
<b>[별표 3]</b>			<b>[별표 4]</b>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5
<u>&lt;신 설&gt;</u>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1]

##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u>대 민 관 계</u>	<u>대 내 관 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u>문의</u>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u>일한다</u>.</li> <li>○ 반상회와 <u>새마을운동</u>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li> <li>○ 근검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u>용모</u>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7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09.5.22)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09.10.30)됨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등 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제명, 안 제2조).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변경 : 군수 ⇒ 부군수

○ 당연직 위원 명시 : 업무관련 실·과장 ⇒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라.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정보화책임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

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으로서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익 증진,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15415('09.11.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20. ~ 10.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거창군 정보화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8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1995.4.10일 설립·개원한 거창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 및 거창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안 제6조, 제9조).
- 군수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며,
-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 등 경비의 지원 외에도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라. 사업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의 내용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각종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하고,
  - 운영보조금은 상근직원의 인건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확보(9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7. 16. ~ 2010. 8. 7.) 결과 : 불임(2건 접수, 1건 반영)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기간 : '10. 7. 16 ~ 8. 7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거창문화원장	제8조 운영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 <u>지원하여야 한다.</u>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할 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은 자치단체 와 지방문화원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어려움	미반영
	제8조제2호 문화원이 시설 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비 → <u>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u>	문화원사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물 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함	반영

##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거창문화원의 육성·발전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그 활동과 운영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거창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제7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제8조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49
----------	-----------

제출연월일	2010. 10. 15.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전입 인원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부모의 육아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개별 지원신청서를 통합하여 지원 청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
- 조례 제정 당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한 부칙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전입 인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6호).

- 현행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 개정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

나. 임신·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부모에 대한 육아경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시책의 내용과 자격, 지원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5호, 제8조제2항 신설).

-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는 자로 하고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현행 :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
- 개정 : 부모(보호자 포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

라.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각 부서별 개별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지원과 전입장려지원으로 구분한 통합 지원신청서로 신설·규정함으로써 지원 창구 일원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안 별지 서식 신설).

- 현행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입장려 등 지원(별도 서식 규정없음)
- 개정 : 현행 개별 서식을 삭제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로 통합 신설

마. 이 조례의 제정 당시(2007.08.01)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한 부칙 제4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지원 시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안 조례 제1852호 부칙 제4항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1010추진단 1억6천만원, 보건소 2천5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9. 8. ~ 2010. 9.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2명 이상 전입하는”을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 2회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제5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제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제5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별지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를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1852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부칙 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b>제3조(정의)</b> (본문 생략) 1. ~ 5. (생략) 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u>2명 이상 전입하는</u> 세대를 말한다. 7. ~ 11. (생략)	<b>제3조(정의)</b> (본문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u> ----. 7. ~ 11. (현행과 같음)
<b>제2장 출산장려 지원</b>	<b>제2장 출산장려 지원</b>
<b>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b> (본문 생략) 1. ~ 4. (생략) <신설> 5.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6.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00만원 이내	<b>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b> (본문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 2회 6. ----- ----- ----- 7. ----- -----
<b>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b> (생략) <신설>	<b>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b>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② 제5조제5호 및 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③ 제5조제6호 및 제7호 ----- ----- ----- ----- ----- -----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방법) (본문 생략)</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p> <p>6.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 지원한다.</p>	<p>제7조(지원방법)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p> <p>6. -----</p> <p>7. -----</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생략)</p> <p>&lt;신설&gt;</p> <p>② 제5조제5호 및 제6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u>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2. ~ 3. (생략)</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p> <p>③ 제5조제6호 및 제7호-----</p> <p>1. -----</p> <p>----- <u>별지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장 영유아양육비 지원</p>	<p>제3장 영유아양육비 지원</p>
<p>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u>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p> <p>----- <u>신청서</u>-----</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p>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u>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u>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p> <p>② ~ ③ (생략)</p>	<p>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 ----- <u>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3호서식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u>를 작성하여 읍·면장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 ----- <u>신청서</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부칙&gt;</p> <p style="text-align: center;">(조례 제1852호, 제정 2007.08.01)</p> <p>① ~ ③ (생략)</p> <p>④ (유효기간)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부칙&gt;</p> <p style="text-align: center;">(조례 제1852호, 제정 2007.08.01)</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